



APR. 2019 발간년월 2019년 4월(통권 제27호)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 발행인 양창호 원장
Vol. 27 감리 황진희 본부장 자료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홈페이지 www.kmi.re.kr

금주 Contents - 해사법률 이슈

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

선박재활용협약 5년 이내 발효요건 충족될 전망^{a)d)}

- 2019년 3월, 일본이 10번째 국가로 선박재활용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향후 5년 이내에 발효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됨

- 선박재활용협약(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)은 선박 건조 및 해체 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 재활용시설의 선박 해체 작업환경 및 시설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고, 체계적인 선박 유해물질의 대체 및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임
- 주요 내용은 선박별 유해물질 목록 작성 및 유지, 선박 재활용 계획 승인 및 비치, 선박 재활용시설 운영 및 승인 등 선박 해체 작업에서의 유해물질 수거 및 작업 안전에 관한 정부, 선주(선박), 조선소, 사업자 등의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음
- 2019년 2월 네덜란드와 일본이 비준함에 따라 현재 10개국이 비준하였으며(2019년 3월 기준), 국제사회 흐름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 이내 발효요건¹⁾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함²⁾
-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(MLIT)은 해당 협약의 조기 발효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IMO 사무국과 함께 “선박 재활용-홍콩협약의 조기 발효를 위하여”라는 주제로 2019년 5월 10일 IMO 본부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

- IMO는 지난 2009년 5월에 이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해체 및 재활용을 위하여 ‘선박재활용협약’을 채택했음

1) IMO 선박재활용협약 발효요건: 최소 15개국 회원국이 비준하고, 비준국가의 총 선대규모가 전세계 선복량 40% 이상, 지난 10년간 비준국의 연간 최대 재활용된 선복량의 합계가 비준국 전체 선복량의 3% 이상 만족한 경우 24개월 후 발효
2) 현재 선박재활용협약은 10개국(벨기에, 덴마크, 프랑스, 일본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파나마, 콩고 공화국, 세르비아, 터키)이 가입하였으며, 해당 국가의 선복량은 전세계 선복량의 약 23.16%를 차지함. 지난 10년간 비준국의 연간 최대 재활용된 선복량은 1,709,955GT로 비준국 전체 선복량의 약 0.57% 수준임(2019년 3월 기준)

- 선박 재활용이란 선박 해체 시 선박을 구성하고 있는 선체, 기계류, 장비, 가구 등의 유해물질³⁾ 및 기타 물질을 수거·회수 처리하고, 재활용시설을 통해 선박의 부속 및 재료들을 폐기하거나 재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
- 선박 재활용 필요성 및 관련 산업 근로자의 안전 문제 등이 이슈는 제42차 MEPC 회의('98.11)에서 처음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, 제47차 MEPC 회의('02.3)에서 IMO의 역할 및 선박 재활용 지침 초안을 마련했음
- 이후 IMO는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을 통한 근본적인 선박 재활용 문제 개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협약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
- 이에 2009년 5월 외교회의를 통해 ‘2009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(선박재활용협약)’을 채택했음

선박 안전 ·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선박 재활용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확대 b)c)d)

- 일자리 창출 및 자재 재활용 등 다양한 이점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 및 유해 폐기물 배출 등 안전·환경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
 - 선박 재활용 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인도, 방글라데시,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발달해왔으며 현재 해당 지역이 전 세계 산업의 약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
 - 이러한 선박 재활용 산업은 관련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선박 해체 시 얻어지는 부속품 및 재료 공급 등의 다양한 이점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
 - 그러나 해당 산업 근로자 안전 및 건강 문제, 유해 폐기물 배출, 주변 환경 오염문제 등 안전·환경 이슈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
- 선박 재활용 분야의 친환경 사업 시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
 - 일본은 2016년부터 IMO MEPC에 협약의 조기 발효를 촉구하는 문서를 지속해서 제출하고 있으며, 올해 5월 IMO 본부에서 관련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
 - 유럽연합(EU)은 IMO 선박재활용협약과 별도로 EU 선박 재활용 규정을 제정하여

3) “유해물질”이란 인간 또는 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 또는 물질 (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Article 2)

2013.12.30부터 적용하고 있으며, EU 국적선 및 EU 기항 외국적선에 대하여 2020.12까지 유해물질목록 비치를 강제화하고 선박 재활용 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

- 중국은 IMO 선박재활용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과 환경보호가 가능한 작업장에서만 국유선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현재 해당 국제협약 비준을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음
- 그리고 재활용 선복량 상위 5개국 중 하나인 인도의 경우, 선박 재활용시설을 통한 선박 재활용 이행현황을 IMO에 제출(2017)하고 동시에 일본 정부 및 산업계의 긴밀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기반으로 재활용시설의 협약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협약 비준 준비를 추진하고 있음

선박 재활용 수요 확대 및 협약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선박재활용협약 비준 필요성 및 관련 법제도 · 정책 검토 중^{c)d)}

■ 2020년 IMO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국제적으로 선박 재활용 수요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
- 현재 일본, 네덜란드 등 10개국이 이미 선박재활용협약에 가입하였으며, 유럽연합, 중국, 인도 등의 경우 선박재활용협약 비준을 검토하고 유사한 국내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국제적으로 선박 재활용 관련 산업의 안전·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
- 이는 선박 연료유의 황산화물(SOx) 배출 규제 등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IMO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현존선 일부에 대한 해체가 검토될 것임
- 국제적으로 선박 해체 및 재활용 수요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박재활용협약 조기 발효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

■ 우리나라의 선박재활용협약 비준 필요성, 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영향 및 준비 사항 검토 등에 관한 연구 수행 중

- 향후 5년 이내 협약 발효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박재활용협약의 발효 전 국내 준비 필요사항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
- 해양수산부 연구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회원국 등 국외 정책 동향 조사, 국내외 조선소의 선박 해체 실태 및 현황조사, 국제항해 선박 및 내항선 선박 해체 실태 및 현황, 협약의 비준 및 국내법 제·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

- 일본,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선박 재활용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, 우리나라 또한 정부, 선주(선박), 조선소, 사업자 등의 측면에서 관련 정책 및 산업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선박의 건조, 운항, 해체, 재활용 단계 등 관련 국내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정책 검토 및 개발 필요

■ 점차 증가될 선박 해체 및 재활용 수요를 고려하여, 국내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

- 우리나라 역시 IMO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선박 해체 및 재활용 수요가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, 이에 대한 국내 법제도, 관련 산업 실태, 수요 예측 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
- 이는 선박의 건조, 운항, 해체, 재활용 단계의 산업 전반에 대해 조사·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, 향후 해운 및 조선업 등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평가해야 할 것임
- 향후 5년 이내에 발효될 수 있는 선박재활용협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선박 해체 및 재활용 산업의 안전·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박혜리 전문연구원

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
(hrpark@kmi.re.kr / 051-797-4629)

참고자료

- a) <http://www.imo.org/en/Mediacentre/WhatsNew/Pages/default.aspx> (2019.03.29. 검색)
- b) <https://www.kmi.re.kr/web/trebook/list.do?rbsIdx=291> (2019.03.29. 검색)
- c) <http://www.mof.go.kr/article/list.do?menuKey=379&boardKey=13> (2019.03.29. 검색)
- d) JI-Hoon SUK,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Regime regarding Ship Recycling –focusing on the review on applicability of the Basel Convention to ship recycling–, 한국해사법학회, 2013, vol.25, no.1, pp.179–208